

대기오염물질관리 규정

제정·개정 이력	
2026.01.01	최초 제정
담당부서	관리부

I. 대기오염물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클린포트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주)클린포트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4)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소배기장치”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방지시설, 배풍기 및 배출구(굴뚝)를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